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 공포,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서식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정취업(변경) 신청서’와 ‘취업통지서 송부’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 제32조의2제1항”을 “영 제32조의2제2항”으로, “제대군인”을 “제대군인 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유의사항: 취업지원을 받은 후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폐지·폐업·휴업·통합·합병이나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를 “삭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제 호					처리기간 10일	
제대군인	등록번호	※ 등록번호 없는 경우 미기재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구분	중기(), 장기(), 제대군인법 제14조제3항제2호 의무복무() 제대군인법 제14조제3항제3호 의무복무(),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보훈부 고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역일		군복무 기간	~ ()년()개월	퇴역연금 수급권 유무	유(), 무()	
제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용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용	

위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
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frac{1}{\sqrt{2}} \quad \frac{1}{\sqrt{2}} \quad \frac{1}{\sqrt{2}}$$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우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u>영</u>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 · 장 기복무 <u>제대군인</u> 의 법률구조 대 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u>영</u> 제32조의2제2항----- ----- <u>제대군인</u> 등----- ----- -----.